

6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·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
7. 관련도서 : 생략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 비치도서와 같음)

공 고

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542호
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공고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중구고시 제2019-84호(2019.07.04.)로 정비계획 변경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63-1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와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817호(2023.09.06.)로 주민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을 2024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3.20.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I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없음)
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: 변경 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	30,725.0	-	30,725.0	중구고시 제2019-84호 ('19.07.4)

2. 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지구명	위치	시행지구 면적(㎡)	사업계획내역(㎡)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획지면적	공공시설 부담면적		
기정	봉래	3지구	남대문로5가 63-1 일원	4,592.5	4,115.9	476.6	서울시고시 제2017-311호 ('17.08.24)	-
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783.6㎡)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